

# 보도자료

2020. 2. 4.(화) 배포



보도일	<b>2020. 2. 4.(화) 14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		
담당	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2과	과장 임상진	감사관 박병일 (☎ 02-3703-2066)
	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	과장 엄진섭	주무관 서효정 (☎ 044-203-6094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	과장 김형수	사무관 권현기 (☎ 044-202-4071)
	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실	과장 장수철	사무관 권순범 (☎ 044-203-5414)
	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	과장 정재욱	사무관 송수진 (☎ 044-202-2053)
	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	과장 노진학	사무관 이성수 (☎ 044-200-5036)
	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	과장 유동준	사무관 김성오 (☎ 042-481-3944)
	농촌진흥청 감사담당관실	과장 이용민	서기관 이경희 (☎ 063-238-0171)

##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

- ◆ 35개 사업(124개 기관)점검하여 연구비 용도 외사용, 연구비 중복 청구,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등 위반사례 267건 적발 (환수대상 규모: 245건, 23.7억 원)
- ◆ 부처 간 행정정보 공유 확대, 다부처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비 집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제도개선 추진

□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지속 확대\* 중이며, 이와 병행하여 R&D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.

\* 예산(조 원): ('11) 14.9 → ('13) 16.9 → ('17) 19.4 → ('19) 20.5 → ('20) 24.2

□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(단장: 최병환 국무1차장)은 교육부 등 7개 부처\*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('19.5월~11월)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

\* 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, 농촌진흥청

○ 그간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뚜렷한 감소 추세\*에 있습니다.

\*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액(억 원):('15) 258 → ('16) 220 → ('17) 153 → ('18) 66

- 그동안 주기적인 합동점검,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간 연계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제재기준 강화로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.

※ (참조) 붙임2 : 연구개발비 합동점검 제도개선 주요내용

○ 그러나,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\*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, 지난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.

\* 연구원 허위 등록 후 부정지급, 인건비 목적 외 사용,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 되돌려 받기 등

□ 이번 점검은,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('16.1월~'18.12월) 종료 사업 중 35개 사업(예산 5,318억 원),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입니다.

○ 특히,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.

※ 주요 점검사항

- ▶ (기자재) 허위구매, 납품가액 부풀린 후 차액 돌려받기, 예산 이중청구 등
- ▶ (인건비) 연구원 허위 등록, 인건비 되돌려 받기 등
- ▶ (연구비·수당) 연구비를 내부 운영비로 사용, 기여도 등 평가 없이 수당 지급 등
- ▶ (여비) 허위로 출장여비 수령, 초청기관 및 소속기관에서 중복 수령 등

□ 점검 결과, 연구장비·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, 연구비 중복청구 23건,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

23건을 포함하여 총 267건(환수대상 규모: 245건, 23.7억 원)을 적발했습니다.

-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,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 후 유용,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,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으며,
-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,
  - 물품구매 후 계약해제·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 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

※ (참조) 붙임3 :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

- 정부는 연구비 횡령·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(6건),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(245건) 및 참여제한(3개 기관, 6명)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 중입니다.
- 아울러,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하겠습니다.
-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·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·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- 첫째,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연구개발비의 중복·과다·허위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.
  - 전자세금계산서, 기업 휴·폐업 변동, 수입신고필증,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.
  - 공유된 정보를 활용하여 집행 의심 건을 통합 분석하고,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.

- 둘째, 다(多)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.
  -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통해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(동일시기·동일거래처 집행내역 등)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.
- 셋째,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.
  - 전자세금계산서 '수정 여부' 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 등 수정사유 정보도 제공받아 허위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.
- 넷째,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.
  -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를 공개하고, 회계법인이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, 부정사용 발견 실적 등에 따라 익년도 정산업무를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.
-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제도개선이 올해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, 향후에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- ※ (붙임) 1. 국가 연구개발사업 개요  
 2. 연구개발비 합동점검 제도개선 주요내용  
 3.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 
 4. 연구개발비 적법·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
 5. 연구개발(R&D)사업 점검 Q&A

□ **개념**

-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

□ **예산 추이**

	'11년	'13년	'15년	'17년	'19년	'20년
금액(조 원)	14.9	16.9	19.7	19.4	20.5	24.2

※ **합동 점검 7개 부처 예산 규모('19년)**

- 과기정통부(7.0조 원), 산업부(3.2조 원), 교육부(1.9조 원), 중기부(1.1조 원), 농진청(0.7조 원), 해수부(0.6조 원), 복지부(0.5조 원) → **총 15.0조 원, 전체 예산(20.5조 원)의 73.3%**

□ **추진 체계**



\* 전체 국가연구개발 예산 편성은 기재부에서 담당

□ **관련 법령 체계**



- 대한민국헌법 "제127조: 인격자유, 과학기술의 발전과 향토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"
- 과학기술기본법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
- "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정에 필요한 사항" 명시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(부령) 제정
-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(과기부 고시)
- 산업기술혁신사업 공공운영유형(산업부 고시)
- 국립공공연구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(공공연 연구)
-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(복지부 고시)
-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(환경부 고시)



	1차 합동점검	2차 합동점검	3차 합동점검
점검시기	'14.9월~12월	'16.10월~'17.1월	'19.5월~11월
관계부처	(3개) 국조실, 미래부, 산업부	(8개) 국조실, 교육부, 미래부, 산업부, 복지부, 해수부, 중기청, 농진청	(8개) 국조실, 교육부, 과기부, 산업부, 복지부, 해수부, 중기부, 농진청
점검결과	부당집행 62건 50억 원 수사의뢰 62건	부당집행 167건 203억 원 수사의뢰 21건, 환수 111건 (14억 원)	부당집행 267건 105억 원 수사의뢰 6건, 환수 245건 (23.7억 원)
제도개선 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문기관과 연구기관 간 회계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지출 절차 및 증빙자료 검증 강화</li> <li>- 비정상 연구비 지출*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</li> </ul> </li> <li>* 심야주말 사용, 동일자 중복 사용, 고액거래 등</li> <li>- 참여연구원 정보 통합 관리 및 학생인건비 유용에 대한 제재 강화</li> <li>• 기관 및 개인 책임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학·출연연 내부 징계 기준 강화</li> <li>- 연구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및 부처 간 제재 정보 공유 등</li> </ul> </li> <li>• 부패신고창구 다변화를 통해 신고 활성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처별 시스템을 연계 하여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</li> <li>• 민간 수행기관 물품 구매기준 마련 및 재무여건 수시 점검</li> <li>•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확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기존) 연구책임자 (변경) 참여연구원까지 확대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처 간 정보공유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비 부정집행 탐지에 필요한 정보 공유 확대</li> </ul> </li> <li>•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시스템 연계</li> <li>•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정보 제공 범위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 외에 금액 변동 및 수정내용도 제공</li> </ul> </li> <li>• 회계법인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정사용 적발 실적 등에 따라 정산업무 추가배정 등 인센티브 제공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'20년 중 추진</p>

구분	항목	적발사례 및 조치사항
<b>현장점검</b> (155건)	인건비(21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50백만 원을 횡령하고, 인건비 349백만 원을 총 43회에 걸쳐 법인카드결제 대금 등으로 유용</li> <li>• (주)○○는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에 포함시켜 4백만 원의 인건비 부당 지급</li> <li>• 시간외근무를 허위 신청(303회)하여 8백만 원 부정수령</li> </ul> ⇨ <b>부당수령액 환수 및 수사의뢰</b>
	연구장비 재료비(26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주)○○는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를 구입(9.1백만 원)하였으며, 현장점검시 장비 실물도 부존재</li> </ul> ⇨ <b>부당집행액 환수</b>
	연구활동비 (49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○○○○는 내부품의서 등 업무관련성 증빙없이 지출용도를 불명으로 법인카드 167차례 12백만 원 부당 사용</li> </ul> ⇨ <b>부당사용액 환수 및 수사의뢰</b>
	연구수당 (11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주)○○○○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수당 54백만 원을 부당집행</li> </ul> ⇨ <b>부당집행액 환수</b>
	연구과제추진비 (41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주)◇◇는 사무용품 구매 없이 6.4백만 원을 카드결제만 하고 추후 필요 물품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용도외 사용</li> </ul> ⇨ <b>용도외 사용액 환수</b>
	기타 (7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주)△△는 2.6억 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1차년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미제출하고, 2차년도 민간부담금(62백만 원)을 미부담 등</li> </ul> ⇨ <b>향후 연구 참여제한</b>
<b>테마점검</b> (112건)	전자세금 계산서 증빙 이중청구 (23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주)△△는 소모성 재료 3건 4.87백만 원 구입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A부처 ◇◇ 과제와 B부처 ○○ 과제에 이중 청구</li> </ul> ⇨ <b>부당청구액 환수</b>
	전자세금 계산서 취소후 미환입(89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주)○○는 3개의 공급업체로부터 총 8건 34백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을 환입하지 않음</li> </ul> ⇨ <b>미환입액 환수 및 수사의뢰</b>

구 분	현 행	개 선
<p>① 부처 간 정보공유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세청, 관세청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확보·분석하는 체계 미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세청 등 대외기관 정보망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연구비 중복·과다·허위집행 적발 기능 강화</li> <li>- 정보 연계를 위한 <b>법적 근거</b>[R&amp;D 혁신특별법(가칭)] 마련 ('20.12월)</li> <li>- 연계정보 활용 의심 건 분석 및 처리 결과 시스템 등록('20.9월)</li> </ul>
<p>②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시스템연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부처(전문기관)별 과제의 연구비 집행 내역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연구책임자(연구기관)별 다른 부처의 동시 수행 과제의 연관된 집행내역을 <b>실시간 확인</b>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('20.9월)</li> </ul>
<p>③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세청 과세정보 중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여부만 제한적으로 제공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정여부 외에 <b>금액변경</b>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허위 거래 여부를 정기적 또는 수시 확인</li> <li>-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일괄 자료 요청('20.6월)</li> </ul>
<p>④ 회계법인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연구비 사용내역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정사용을 방지하는데 있어 정산회계법인의 역할과 기능이 미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산 과제별 회계법인 담당회계사의 외부공개를 통해 회계법인의 책임 의식 강화</li> <li>-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회계법인과 공유하고, 회계법인은 연구기관에 대한 <b>사업비 집행 컨설팅</b>을 실시</li> <li>- 사업비 집행 컨설팅 등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 시 부정사용 발견 실적 등을 평가하여 익년도 <b>정산업무</b> 추가 배정 <b>인센티브</b> 제공('20.6월)</li> </ul>



□ 2020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

(단위 : 억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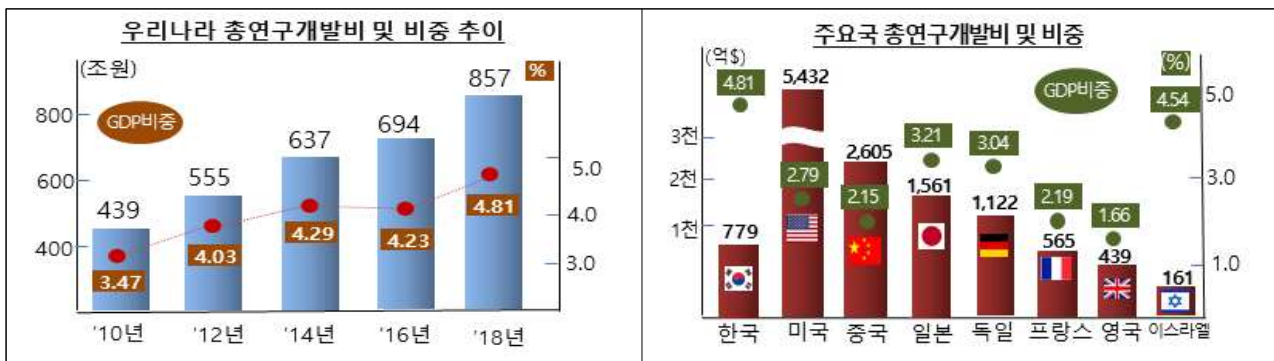
구분	'19년	'20년	증감	%	구분	'19년	'20년	증감	%
과기정통부	69,956	79,882	9,926	14.2%	국조실	5,002	5,178	176	3.5%
산업부	32,068	41,718	9,650	30.1%	환경부	3,315	3,601	286	8.6%
방사청	32,285	39,191	6,906	21.4%	농림부	2,239	2,350	111	5.0%
교육부	19,286	21,933	2,647	13.7%	기상청	1,105	1,014	△91	△8.2%
중기부	10,744	14,885	4,141	38.5%	산림청	1,187	1,289	102	8.6%
농진청	6,504	7,131	627	9.6%	식약처	891	1,000	109	12.2%
해수부	6,362	6,906	544	8.6%	기타	4,051	4,700	649	16.0%
복지부	5,511	6,170	659	12.0%	합계	205,328	242,195	36,867	18.0%
국토부	4,822	5,247	425	8.8%					

□ 2020년 정부 연구개발 중점투자 분야



□ 우리나라 및 주요국 연구개발비 현황

- '18년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85조 7,287억 원(779억 달러)으로 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(1위 미국, '17년 기준 5,432억 달러)
- 국내 총생산(GDP) 대비 비중은 4.81%로 세계 1위 수준\*(2위 이스라엘, '17년 기준 4.54%)



\*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 통계는 '17년 기준으로 향후 국가별 '18년 통계 발표에 따라 변경 가능

**1. 부패예방감시단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소관부처와 합동 점검한 배경?**

-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 관련 예산 지원은 지속 증가 추세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
- 그동안의 소관부처의 관리 강화, 제도적 장치 보완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비의 부정수급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유용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, 제보 등을 감안하여 종합 점검에 나서게 되었음

※ 2016년도에도 국무조정실/관계부처 합동점검한 바 있음

**2. 이번 합동점검의 특징(two-track 접근)?**

- 연구개발 사업은 규모가 크고 지원 범위도 방대하여 일정 기간에 전수 점검하기는 사실상 어려움
  - 지원규모가 크고(예 : 예산 100억 원 이상 사업)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비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현장점검 실시
- 부패예방감시단은 전자세금계산서 허위·중복 청구 등 부정집행 의심건을 별도로 추출하여 각 부처 사업내용과 비교(소관부처 자체 점검 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부정사례를 다수 적발, 국세청 협조)

### 3. 금번 점검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?

□ 과거에 비해서 적발 건수·규모가 다소 줄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중복 청구 등 새로운 양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부정수급 사례도 발견하였음

→ 보다 시스템적으로 연구비 집행이 처리되고, 유관 부처 및 실제로 연구비 집행을 관장하는 전문기관 간 정보교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

### 4.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부정수급 점검의 효과는?

□ 연구개발비 증빙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소관부처가 다른 과제에 이중 청구하여 연구비를 부정 수급한 사례 23건 46백만 원을 적발

○ 물품구매 후 계약해제·반품 등의 사유로 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미환입한 사례 89건 256백만 원을 적발하였음

→ 처음 시도한 점검방법이어서 관련 기관 간 확인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의미있는 접근 방식이었고, 연구비 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면 여러 경로를 통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됨

## 5. 가장 적발이 많이된 부정수급 유형은?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은?

□ 연구장비·재료비(26건, 51.4억 원), 인건비(21건, 36.4억 원), 연구활동비(49건, 4.8억 원)가 대부분을 차지(회의비 등 연구과제추진비, 연구수당은 대부분 소액)

→ 연구장비·재료비나 인건비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휴·폐업정보(국세청), 수입장비 신고필증 정보(관세청), 건강보험자격득실 정보(건보공단),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(국세청) 등 연구비 부정집행을 탐지할 수 있는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

다부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·전문기관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을 공유·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

## 6. 향후에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점검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?

□ 이번 점검결과를 연구개발 사업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연구개발 사업 운영 시 적극 참조함으로써 부정수급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유의하도록 할 예정

○ 이번 조치 및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향후에도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빈발하거나 특이사항 발견 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테마점검을 실시할 예정임